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76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권성동・이철규・강대식

추경호 • 한무경 • 구자근

정운천 • 태영호 • 윤한홍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논·밭 직불제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해 쌀농사 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농촌의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즉 2017년 1월 1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이는 구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과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 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 직 불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 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3호).
-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 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항목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 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9조제1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u>농지등</u>	<u>누</u>
<u>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u>	<u>지등</u>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	
<u>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u>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	

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

	가.•나. (현행과 같음)
2.	
	<u>농지등</u>

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실적이 있는 경우
- ②·③ (생 략)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생략)
-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

가.·나. (현행과 같음)	
3	
농지등	
②・③ (현행과 같음)	
(원 (원 8년 1년	대상
자)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 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 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 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 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삭 제>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 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 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1. · 2. (생략)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 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 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24조 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 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 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 다.

가. · 나. (생 략) 4. • 5. (생략)

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 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1. •	2.	(현	행과	· 길	음)			
3. 2	제1	항저]1호	에	해	당ㅎ	누여	제	14
조제	भ <u>ी</u> 2व	항에	따	라	등.	록신]청-	을	하
느	자	중여	세서	다	음	각	목.	의	어
<u>느</u>	하	나	이성	ㅏ에	ਨੇਂ	H당	하는	-	자.

가. •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 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 급 또는 등록제한) ① -----

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 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 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 1. · 2. (생략)
- 3. <u>제9조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4. ~ 9. (생 략)
- ②·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제1항에</u>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